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119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683,317원 및 그 중 9,406,706원에 대하여 202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8. 8. 8. 접수 제124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이숙미

별지